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수자원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비밀유지 의무 등 관련 〉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64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벌칙 명시	2
※ 참고자료	9
1. 민간위원 등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관련 입법례	9
2.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대상 안건	10

I. 제안경위

2024년 8월 27일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하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이용·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자원과 관련된 비밀 정보를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공공복리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 비밀유지 의무의 명시적 근거규정과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39조제3호 신설 등).

III. 검토의견

1. 국가·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벌칙 명시

개정안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민간위원) 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에게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37조의2 신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안 제39조제3호 신설) 하는 내용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7조의2(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자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38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1. <u>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u> 2. <u>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u> 제39조(벌칙)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2. (생략) <u><신설></u>	<u>2.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u> 제38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제37조의2 각 호의 사람-----</u> <u>----제129조-----</u> <u>-----</u> <u>-----.</u> <u><삭제></u> <u><삭제></u> 제39조(벌칙)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3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u>
--	--

현행법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¹⁾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법 제38조제1호) 또는 수문조사시설²⁾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위탁받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³⁾⁴⁾(법 제36조제1항),

1) 법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①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1.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 ④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 경제학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수자원 개발, 하천, 도시, 환경, 사법·입법 또는 경제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에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29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하천·호수·늪의 수위, 유량(취수량, 방류수량 포함), 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 증발산량(蒸發散量), 토양수분 함유량에 관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조사·분석하기 위한 시설로서 강수량관측소, 수위·유량·유사량관측소, 증발산량관측소, 토양수분량관측소 등을 말함(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3) 법 제36조(손실보상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참고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아래와 같이 개별 설치근거법률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근거를 두고 있음.

「한국수자원공사법」 제6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② 제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0조의3(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벌칙) ② 제5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외 하천유역조사, 홍수·갈수 예보 등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자원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⁵⁾(법 제38조제2호)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의제)함으로써 「형법」 제127조⁶⁾를 적용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그런데 이 법에 따른 수자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공공복리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에 비밀유지 의무의 명시적 근거 규정과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있음.

5) 법 제3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수문조사 전담기관, 한국하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 업무
2.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 업무
3. 제8조에 따른 홍수·갈수 예보 업무
4.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5. 제10조에 따른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업무(댐 하류구역의 수문조사는 댐 운영에 필요한 주요지점으로 한정한다)
6. 제11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업무
7. 제12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8.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9. 제24조에 따른 수자원시설 재평가 업무
10. 제25조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
11. 제26조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 실용화·산업화 관련 업무
12.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 관련 업무
13. 제28조에 따른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업무

6)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7) 법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제32조 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에 개정안은 공무상비밀 누설죄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조항을 삭제하는(법 제38조) 대신, 국가·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이나 이 법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이하 “민간위원 등”)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고(안 제37조의2 신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은 직무상 비밀누설행위를 공무원 의제를 통해 「형법」 상 공무상비밀 누설죄(제127조)로 처벌하는데 반해, 개정안은 이와 같은 직무상 비밀누설행위 외에 도용⁸⁾하는 행위까지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제재수단 강화를 통해 직무상 비밀누설 및 도용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직무상 비밀누설행위 처벌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등이 비밀누설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고, 개정안에 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8) 참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용의 개념정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대법원은 이와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비밀의 도용’은 비밀을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현행법과 개정안의 최고 법정형 수준을 비교할 때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동 규정을 개정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음, 비밀의 도용행위 처벌과 관련하여 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비밀누설 및 도용행위를 함께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입법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도 있으나⁹⁾ 대다수의 입법례는 누설행위만 처벌대상으로 하고 도용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¹⁰⁾

이처럼 다수의 입법례에서 도용행위를 별도로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국가(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등의 도용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할지 여부는 ①도용행위를 처벌하는 입법례에 대한 분석과 함께 ②국가(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흥재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3. 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2. 기획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3. 제1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기관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4. 관리센터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5.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6.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10) 민간위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관련 입법례에 관해서는 참고자료 1. 참조

또는 수탁기관의 임직원들의 역할이나 업무¹¹⁾의 특성이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나 수탁기관의 임직원의 그것에 비해 비밀유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처벌해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7

11) 예를 들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안전에 관해서는 참고자료 2. 참조

※ 참고자료

1. 민간위원 등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관련 입법례

법률명	대상자	위원회 구성	처벌대상 행위	처벌기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7②)	공무원 위촉위원	비밀누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31③)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34)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비밀누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39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진흥재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시험·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56)	공무원 위촉위원	비밀누설·도용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4② 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기획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공원조성사업시행자·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기관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관리센터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57)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2021.11.11.시행)	공무원 민간위원	비밀누설·도용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58)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31)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비밀누설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30)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비밀누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8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현재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과거에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의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23)	공무원 위촉위원	비밀누설·직무상 목적 외 사용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2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5①)	공무원 위촉위원	비밀누설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3②)

※출처: 환경부

2.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대상 안건

법령명	심의대상	관련조항	소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장기종합 계획 수립·변경	제17조제3항제3호	환경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변경	제18조제3항제4호	환경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변경	제20조제3항	환경부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제29조제1항	환경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제25조	환경부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환경부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환경부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환경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제4조제7항	환경부
하천법	국가하천의 지정·변경·해제	제7조제4항	국토부
	경계하천이 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제9조제2항	국토부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제10조제2항	국토부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폐지	제12조제2항	국토부
	지방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제25조제2항	국토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제25조제5항	국토부
	하천유지유량 결정	제51조제1항	환경부
	하천수 허가수량 조정	제53조제2항	환경부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	제54조제1항	환경부

※출처: 환경부